

# 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오 정 은 (한성대학교)  
(mouton3@hansung.ac.kr)



## 국문요약

현재 한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법자 증가 문제를 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 초래하는 안보위협 요인이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사증면제가 항상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미 국내에 아세안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사증면제가 일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한국에 오는 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증면제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증면제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여행자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고,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증면제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신남방정책, 불법체류자, 사증면제, 안보, 아세안

## I. 서론

탈냉전 이전에는 국가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안보를 논했다. 여기서 안보의 주체는 국가, 안보의 수단은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등장한 신안보 개념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위협들을 모두 안보의 문제로 다룬다.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 테러, 식량과 인구, 에너지 등이 모두 안보의 주제가 된다. 주요 이민국가에서는 이민도 중요한 안보의 주제로 취급한다.<sup>1)</sup> 이민과 관련하여, 외국인 범법자 증가로 인한 수용국의 법질서 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에 따른 사회 분열, 국제테러 조직원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이 주로 안보문제로 다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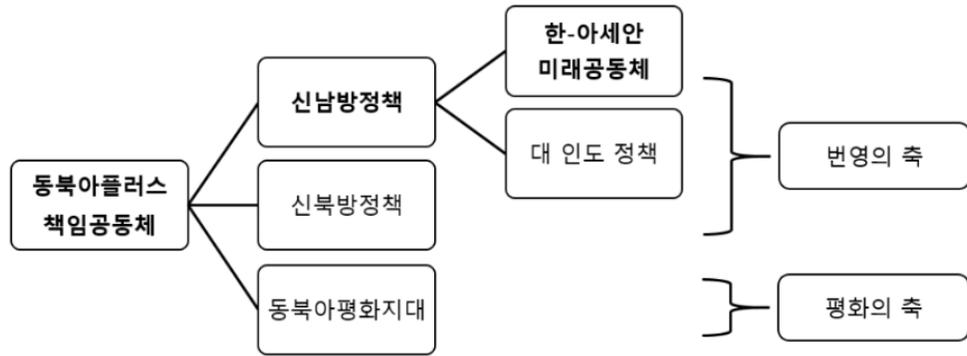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민과 안보를 연계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이민을 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對아세안 이민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생존의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동북아에 더해 북방과 남방의 공동번영 준비한다는 의미로 발표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외교 전략이다. 동북아플러스 하부 정책구도에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지대와 함께 신남방정책이 설정되어 있다(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은 크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대 인도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한국 제2의 교역대상이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아세안 국가와의

1) 일례로, 미국에서 이민정책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사증프로그램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담당한다.

관계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아시아경제 2018/05/09)<sup>2)</sup>

〈그림 1〉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도와 신남방정책의 위치



출처: 이재현(2018).

정부는 2017년 11월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 신남방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조직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sup>3)</sup>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기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 원칙이 등장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관계 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인적 교류 증진은 한-아세안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 사이에 신남방정책 성공을 위해 한국의 對아세안 이민정책을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오정은 외 2019).

2) KOTRA가 2018년 3~4월에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거주자 1,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93.8%에 달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915401662959>(검색일: 2019.07.11.).

3)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최되었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이민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민정책을 개방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면 크게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상호간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시행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방문을 위해서도 사증이 요구되는 그룹이다.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은 전자의 경우로, 한국과 해당 4개국 사이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들이 무사증으로 서로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과 사증면제 상태가 아니고, 한국 방문을 위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 쪽 보다는 한국이 폐쇄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는 양쪽 모두 단기 방문객에게까지 방문사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를 제외한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과의 관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인 단기방문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국에게 단기방문객도 사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의 해당 5개국에게 더욱 폐쇄적인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무사증으로 한국에 오면 불법체류를 비롯한 각종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한국과 해당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인건비 격차이다. 즉,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 오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불법체류와 불법노동 목적으로 여행객을 가장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오정은 외 2019).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부처별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적 입장을 넘어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양자 관계 증진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사증 없이 상호 방문이 가능해진다면, 한-아세안 사이의 인적교류 확대와 이로 인한 한-아세안 경제교류 증대, 아세안 출신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 아세안 국가에서의 한국 위상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가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인 이유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사증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반드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반문의 여지도

있다.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가 국내 경제 발전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불법체류자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다른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강동관 2015), 불법체류자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체류라는 행위가 국내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고,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인권침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는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불법체류자들이 불법 신분으로도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장소 주변이나, 국내체류 외국인들과 정보 교환이 유리한 장소에 집중 거주하면서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밀집지역이 도시 낙후화를 야기하거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對아세안 회원국 이민정책 변화 요구가 등장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향한 개방적 이민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방적 이민정책을 상징하는 한-아세안 상호 단기방문 사증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통해 한국에 미치는 안보위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은 제 II장에서는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여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 III장에서는 현행 이민정책 하에서 국내체류 불법체류자 실태를 살펴보고, 제 IV장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단기방문객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증감 정도와 한국의 수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제 V장에서는 신남방정책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對아세안 이민정책의 적절한 변화 방식을 제안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II. 일반여권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 경험적 분석

일반적으로 국가 간 사증면제는 인적교류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증감 사이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채,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증제도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에서 사증제도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이원식·윤문길(2009)이 중국동포 방문사증과 불법체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최은하(2016)가 무사증제도가 운영되는 제주지역에서, 무사증입국자 증가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한 연구 정도가 있는데, 두 연구 모두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는 한국과 외국 사이의 사증면제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예로 든 경험 사례는 한-일 사증면제와 한-태국 사증면제 사례이다. 한-일 사증면제는 추진 과정에서 불법체류 증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한-태국 사증면제는 현재 한국의 對아세안 사증면제 추진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증면제와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 사례는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필연적으로 불법체류자 증가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일 사증면제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한국 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가 확정된 이후에 한국이 한·일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오정은 외 2016).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의견이 나뉘었다. 외무성과 관광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성은 찬성했던 반면에, 법무성과 경찰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오정은 외 2016).

일본 법무성이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였다. 일본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일 사증면제가 이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일본 경찰청도 국내 치안유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반대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도 한-일 사증면제의 반대자들의 논리가 되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2000년에 한국의 경우 11,947달러인 반면에 일본은 37,302달러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찬반 논의 끝에 결국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 조치가 결정되었다(오정은 외 2016).

사증면제 이후,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법무성과 경찰청의 우려와 달리,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1>은 사증면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를 보여준다. 여전히 일본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 절대 수와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05년에는 43,151명이었는데, 사증면제조치가 시행된 2006년에는 40,203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 변화(2006-2019)

(단위: 명)

연도	전체	한국인	한국인 비율	연도	전체	한국	한국인 비율
2006	193,745	40,203	20.8%	2013	62,009	15,607	25.2%
2007	170,839	36,321	21.3%	2014	59,061	14,233	24.1%
2008	149,785	31,758	21.2%	2015	60,007	13,634	22.7%
2009	113,072	24,198	21.4%	2016	62,818	13,412	21.4%
2010	91,778	21,660	23.6%	2017	65,270	13,265	20.3%
2011	78,488	19,271	24.6%	2018	66,498	12,876	19.4%
2012	67,065	16,927	25.2%	2019	74,167	12,766	17.2%

주: 매년 1월 1일 기준.

출처: 일본법무성 홈페이지 불법체류자통계

(<http://www.moj.go.jp/content/000109294.pdf>; <http://www.moj.go.jp/content/001289212.pdf>).

이처럼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추진한 ‘불법체류자 5년 반감 계획’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있다(오정은 외 2016). 일본 정부의 불법체류자 반감 계획은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사이에 개입된 외부변수로, 사증면제와 불법체류자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반드시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안보위협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효과의 완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 2. 한-태국 사증면제

한국과 태국은 1981년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상호 사증면제를 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법체류자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오정은 외 2019).

〈표 2〉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연도별 불법체류 현황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 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2014년에 신규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대비 3.6배 증가하였고, 전체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6.7%로 상승했다.

2014년은 우리나라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다소 완화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정부가 태국인의 입국심사를 완화한 배경에는 태국정부와의 마찰과 타협이 있었다(오정은 외 2019). 2000년대 중반부터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정부가 출입국 항에서 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했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사례가 증가하였고, 태국정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태국에서 관광사증으로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인에 대한 체류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양국 간 외교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태국인에 대해 엄격하게 실시하던 입국심사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태국인의 국내 입국은 이듬해인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연평균 20,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신규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태국인 입국자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

유형 \ 연도	1997	2002	200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태국인 입국자	62,653	74,843	148,194	311,291	389,773	375,270	469,619	375,021	474,262	503,777
신규불체율 <sup>1)</sup>	3.0	3.5	1.6	1.8	2.1	2.3	6.7	6.2	4.2	5.5
신규불체자	1,865	2,604	2,392	5,879	8,318	8,596	31,237	23,226	19,997	27,717

주: 1) 신규불체율은 당해년도 해당국가 불법체류 발생자 수/당해년도 해당국가 입국자 수 의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불법체류 태국인이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태국인의 누적불체율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표 3〉은 국내체류 태국인의 누적불체율을 보여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 태국인 수는 153,259명인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가 68,449명에 달해, 누적불체율이 44.6%에 이르렀다.

〈표 3〉 국내체류 태국인 누적불체율(2002-2017)

(단위: 명)

유형 \ 연도	2002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인원	27,027	47,813	45,945	55,110	94,314	93,348	100,860	153,259
불법체류자	20,020	14,887	17,591	20,665	44,283	52,519	56,099	68,449
누적불체율 <sup>1)</sup>	74.1%	31.1%	38.3%	37.5%	47.0%	56.3%	55.6%	44.6%

주: 1) 누적불체율은 당해연도의 불법체류자 수/전체 체류인원 수 의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태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이유는 태국이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태국 마사지업소와 같이 태국인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노동시장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하면, 태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태국에서보다 빨리 큰돈을 벌수 있고, 불법 신분으로도 일자리를 찾기 쉬운 상황에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서 태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태국인의 높은 불법체류율은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입장을 견지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일반여권 사증면제 신증론을 펼치며 제시하는 근거로 종종 인용되어 왔다. 신남방정책을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과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할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높은 불법체류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태국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높은 불법체류율이 사증면제의 직접적 효과라고 단정하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1981년 한-태국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이래 오랫동안 불법체류는 양국간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불법체류 문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시작되고 약 20년이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부각되었다. 사증면제 그 자체가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결합되어 작용할 때 불법체류 문제가 부상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 Ⅲ. 국내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새로이 일반여권 사증면제에 들어갈 경우,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남방정책을 위한 사증면제 고려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증면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증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국내 안보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기존의 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생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취하면서, 2008년 이후 4년 동안은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2년에 다시 증가하여 현재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불법체류자 수는 183,10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355,126명으로 5년 전보다 93.9% 증가하였다. <표 4>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불법체류자 수를 보여준다.

**<표 4> 연도별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2008-2018)**

(단위: 명)

연 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08	1,158,866	200,489	93,461	542	106,486	17.3%
2009	1,168,477	177,955	83,729	613	93,613	15.2%
2010	1,261,415	168,515	78,545	732	89,238	13.4%
2011	1,395,077	167,780	82,848	578	84,354	12.0%
2012	1,445,103	177,854	92,562	1,579	83,713	12.3%
2013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주: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합계) ÷ 총체류자 × 100.

출처: 법무부(2019b).

국내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을 넘기면서 출국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지리적 조건상 외국인이 밀입국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육로 등을 통한 외국인의 밀입국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한국은 비교적 정확하게 불법체류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입국기록은 있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기록이 없는 자를 과도체류 불법체류자로 집계하면 된다.

외국인 불법체류는 사증면제나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서 많이 나타난다. <표 5>는 최근 5년간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에게 36가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3개월 미만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2014-2018)

(단위: 명)

체류자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sup>1)</sup>
사증면제(B-1)	46,117	56,307	63,319	85,196	162,083	45.6%
관광통과(B-2)	15,899	19,658	19,038	20,662	30,028	8.5%
단기방문(C-3)	45,746	47,373	46,041	56,331	67,157	18.9%
유학(D-2)	2,157	1,585	1,034	1,112	1,419	0.4%
기술연수(D-3)	2,083	1,876	1,536	1,448	1,373	0.4%
일반연수(D-4)	4,816	4,425	4,687	7,209	12,613	3.6%
비전문취업(E-9)	52,760	49,272	45,567	46,618	47,373	13.3%
선원취업(E-10)	4,974	5,240	5,480	5,993	6,174	1.7%
방문동거(F-1)	3,992	3,373	2,440	2,774	3,134	0.9%
거주(F-2)	7,838	5,967	3,660	3,063	2,631	0.7%
기타(G-1)	3,078	2,709	3,607	6,916	7,893	2.2%
방문취업(H-2)	6,773	5,090	2,315	2,415	2,320	0.7%
기타	12,545	11,293	10,247	11,304	10,928	3.1%
총계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주: 1) 2018년 기준.

출처: 법무부(2019a).

외국인이 사증면제로 국내에 오는 경우는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일방적 조치로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와, 국가 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사이에 사증면제를 합의하고 해당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사증면제 허가는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목적 입국자에게 한해 주어지며, 그 주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이다. 그런데, 사증면제로 입국한 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서, 신남방정책을 위해 아세안 6개국과 사증면제를 할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게 된다.

현재도 국내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례가 적지 않다. <표 6>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수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아세안 국가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태국은 한국과 상호 사증면제 상태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신남방정책 추진이란 미명하에 아세안 6개국과 상호 사증면제를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할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표 6>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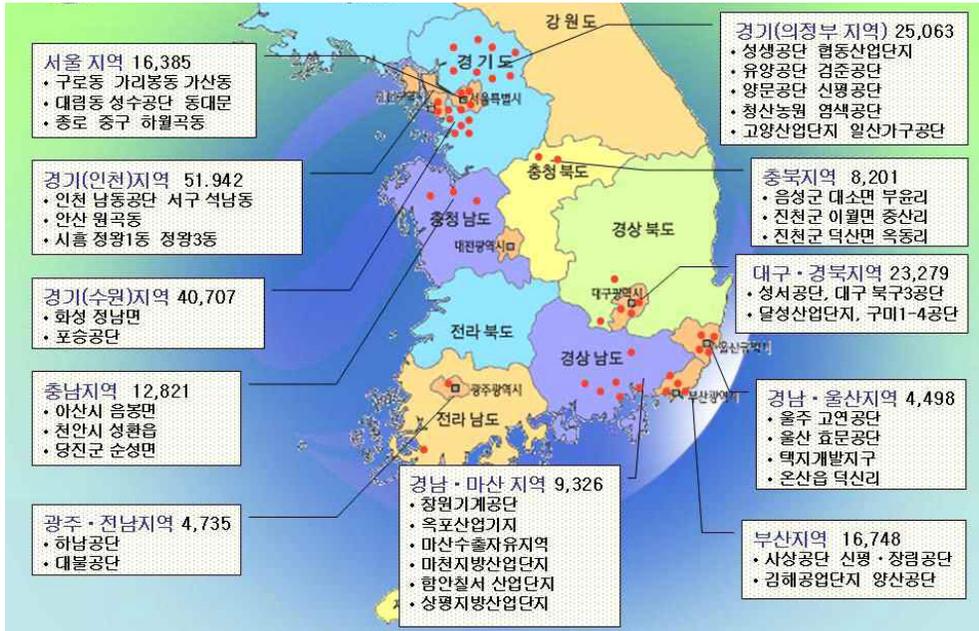
(단위: 명)

국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sup>1)</sup>
태국		44,283	52,519	56,099	68,449	138,591	39.0%
중국		70,311	67,333	55,831	62,827	71,070	20.0%
베트남		26,932	26,563	27,862	31,691	42,056	11.8%
몽골		7,407	8,274	10,146	12,719	15,919	4.5%
필리핀		12,814	12,358	11,295	11,954	13,020	3.7%
카자흐스탄		359	1,337	2,914	7,214	11,413	3.2%
러시아(연방)		1,165	1,600	3,849	8,533	10,906	3.1%
인도네시아		7,237	7,267	7,181	7,626	8,110	2.3%
우즈베키스탄		4,627	4,680	4,452	5,241	6,162	1.7%
캄보디아		3,115	3,556	3,886	4,715	5,897	1.7%
스리랑카		4,232	4,460	4,580	4,823	5100	1.4%
기타		26,294	24,219	20,876	25,249	26882	7.6%
총계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주: 1) 2018년 기준.  
출처: 법무부(2019a).

불법체류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처지가 비슷한 불법체류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생활하는 밀집지역이 전국 곳곳에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다수의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이 확인한 적이 있다. <그림 2>는 10년 전인 2008년 법무부가 파악한 전국의 주요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보여준다.

〈그림 2〉 국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분포도(2008)



출처: 차용호(2015, 103).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최근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년 전에 비해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도 곳곳에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이 전국 각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IV. 아세안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현황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향후 보다 완화된 사증제도를 도입할 때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예에서도, 한-일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반대하였던 일본 기관들은 당시의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불법체류자 수로 향후 완화된 사증제도 시행 이후의 불법체류자 증감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 반문의 여지가 있다. 사증면제 이후에 불법체류자 수가 큰 변화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 수와 비율은 일반국민들 사이에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분위기 형성의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사증면제와 같이 과감한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도 아세안 국가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이미 한국과 사증면제 상태에 있는 4개국과, 현재 사증이 필요하지만 향후 사증면제가 검토되는 6개국을 구분하여, 해당 국가 출신 국민들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 통계를 분석하였다.

〈표 7〉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의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이루어진 아세안 4개국은 평균 40%의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아세안 6개국은 평균 18%의 불법체류율을 보여, 아세안 10개국 평균 24%의 불법체류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아세안 4개국의 높은 불법체류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체류율 수치가 높은 이유는 태국의 지나치게 높은 불법체류율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세안 4개국 가운데 태국을 제외한 3개국의 불법체류율은 모두 한자리수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 6개국 사이에도 국가별로 불법체류율에 적잖은 편차가 존재한다. 캄보디아는 전체 국내체류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율이 평균 9% 정도인 반면, 필리핀은 24%, 라오스는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기록하였다.

〈표 7〉 아세안 국가 출신 외국인 국적별 불법체류율<sup>1)</sup>(2010-2018)

국적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sup>2)</sup>
10개국 전체	19%	19%	23%	22%	25%	26%	25%	25%	36%	24%
6개국 전체	17%	17%	21%	20%	18%	17%	16%	17%	19%	18%
베트남	15%	16%	21%	23%	21%	19%	19%	19%	21%	19%
필리핀	24%	25%	32%	27%	24%	22%	20%	20%	22%	24%
인도네시아	15%	15%	16%	16%	15%	16%	15%	17%	17%	16%
캄보디아	9%	8%	7%	7%	8%	8%	8%	10%	13%	9%
라오스	7%	18%	22%	25%	37%	30%	24%	26%	22%	23%
미얀마	28%	18%	14%	10%	10%	8%	8%	8%	9%	13%
4개국 전체	25%	27%	34%	32%	42%	50%	48%	41%	65%	40%
태국	28%	31%	28%	37%	47%	56%	56%	45%	70%	44%
말레이시아	7%	7%	6%	5%	4%	4%	5%	11%	17%	7%
싱가포르	1%	1%	1%	1%	1%	1%	0%	1%	1%	1%
브루나이	1%	5%	1%	1%	2%	2%	1%	1%	4%	2%

주: 1)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수/국적별 국내 체류자수.

2) 2010~2018년 평균.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이번에는 향후 새로이 한국과 상호 사증면제를 고려하는 아세안 6개국 국민들의 불법체류율을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과 비교하였다. <표 8>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을 전체 외국인과 아세안 6개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11%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16.8%를 기록하여 아세안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개국 국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얀마(8.3%)와 캄보디아(10.0%)는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낮은 불법체류율을 보였지만, 라오스(26.2%)와 필리핀(20.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여, 아세안 6개국 사이에도 편차가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불법체류자가 전에 불법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국가간에 더욱 큰 편차를 보였다.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 반면, 라오스(0.1%)나 미얀마(0.8%)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1% 미만을 보였다.

<표 8> 아세안 6개국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 현황(2013-2017)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외국인 수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A)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			11.6	11.6	11.3	10.2	11.5
아세안 6개국 불법체류자 (B)			50,819	52,029	51,634	52,344	58,366
국내체류 아세안 6개국적자 (C)			254,681	285,670	301,695	323,403	346,774
- B/A			27.8	24.9	24.1	25.0	23.2
- B/C			20.0	18.2	17.1	16.2	16.8
캄 보 디 아	불법체류자(D)		2,330	3,115	3,556	3,886	4,715
	국내체류 캄보디아인(E)		31,986	38,395	43,209	45,832	47,105
	- D/A		1.3	1.5	1.7	1.9	1.9
	- D/E		7.3	8.1	8.2	8.5	10.0
인 도 네 시 아	불법체류자(F)		6,723	7,237	7,269	7,181	7,626
	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G)		41,599	46,945	46,538	47,606	45,328
	- F/A		3.7	3.5	3.4	3.4	3.0
	- F/G		16.2	15.4	15.6	15.1	16.8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라 오 스	불법체류자(H)		212	328	297	279	320
	국내체류 라오스인(I)		835	898	1,004	1,146	1,221
	- H/A		0.1	0.2	0.1	0.1	0.1
	- H/I		25.4	36.5	29.6	24.3	26.2
미 얀 마	불법체류자(J)		1,285	1,603	1,591	1,841	2,060
	국내체류 미얀마인(K)		12,678	15,921	19,209	22,455	24,902
	- J/A		0.7	0.8	0.7	0.9	0.8
	- J/K		10.1	10.1	8.3	8.2	8.3
필 리 핀	불법체류자(L)		13,029	12,814	12,358	11,295	11,954
	국내체류 필리핀인(M)		47,514	53,538	54,977	56,980	58,480
	- L/A		7.2	6.1	5.8	5.4	4.8
	- L/M		27.4	23.9	22.5	19.8	20.4
베 트 남	불법체류자(N)		27,240	26,932	26,563	27,862	31,691
	국내체류 베트남인(O)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9,738
	- N/A		14.9	12.9	12.4	13.3	12.6
	- N/O		22.7	20.7	19.4	18.7	18.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2014년 이후 국적별 불법체류자 수).

요약하면, 현재 아세안 국가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미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사실은 향후 해당 국가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기존의 동향인 국내 불법체류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불법체류자로 정착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향후 아세안 6개국과 사증면제를 추진하면서 우려와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비록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더라도, 아세안 6개국과의 사증면제가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고, 이것이 사증면제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보다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면,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향해 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증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법체류자 증가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국가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을 확신시키는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법체류자 증가를 우려하면서 안보위협을 호소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사증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V. 결론: 신남방정책을 위한 이민정책 개선 방향

신남방정책의 성공은 인적교류 활성화가 전제되어 있으며, 인적교류 활성화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사증완화를 필요로 한다. 사증완화에는 사증서류 간소화나 복수국적 확대와 같이 사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식도 포함되지만, 현재 정부의 논의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단기방문객에게 아예 사증을 면제해주는 과감한 방식 도입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세안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불법체류자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오늘날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죄자 혼란, 국민여론 분열, 인권유린,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형성을 통한 사회 불안 가중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문제와 결부된다. 사증면제로 인해 불법체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증면제 추진은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국가 간 사증면제 사례를 분석하면, 사증면제 이후 항상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아세안 국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증면제가 추진이 과연 타당한지, 사증면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사증면제는 추진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증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는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안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증면제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입국하는 사태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자정보시스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을 구축하여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사증 없이도 입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미국의 ESTA를 모델로 하여 2016년부터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유럽여행정보승인제도(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ETIAS)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편리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가의 안보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형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용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을 연간 1,5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이재현 2018).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 도입과 같은 고난도 과제가 2020년까지 완성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의 조속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차선책으로, 국가 간 완전한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기 앞서, 한시적으로 양국 간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는 것도 신중한 접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년에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기념하여 6개국과 한시적으로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시행한다거나, 2019년 한-필리핀 수교 70주년, 2020년 한-캄보디아 수교 50주년 등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특별한 기념연도를 기회로 부분적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고, 이 시기에 관찰되는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한-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모두 큰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민정책적 측면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을 통제하는 방어적 기제를 넘어,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추진한다면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 강동관. 2015.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4.
- 법무부. 2018. 2018교정통계연보.
- \_\_\_\_\_. 2019a. 2018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_\_\_\_\_. 2019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 \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2018년 각연도.
- 오정은·강동관·김경미·이기현·이원웅·조경엽·황진영. 2016. 한·중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對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 연구. 외교부.
- 오정은·강동관·신지원·이상림·이승복·정기선. 2011.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IOM이민정책연구원.
- 오정은·김석호·백용훈·이원웅·정정훈. 2019. 아세안 6개국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 필요성 및 구체 시행방안. 외교부.
- 이원식·윤문길. 2009. 방한 사증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파급 효과분석. 서비스마케팅저널 2(2), 41-55.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01.24.
- 차용호. 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은하. 2016.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0(3), 227-25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
- 통계청 [kostat.go.kr](http://kostat.go.kr).

● 투고일: 2019.07.30. ● 심사일: 2019.07.30. ● 게재확정일: 2019.08.08.

## **A Study on Security Threats due to the Visa Waiver for Citizens from ASEAN Countries as Part of New Southern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crease of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Oh Jungeun (Hansung University)

These days,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the ROK) is pushing a new diplomatic policy called the New Southern Polic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iance on four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ROK-the United States,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Japan. As part of this new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implementing the visa waiver between the ROK and ASEAN countries, expecting to multiply human mobility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it is apprehended that the visa waiver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rregular immigrants may threaten the Korean security as disturbing the labor market order by illegal foreign workers and/or as arousing anti-immigration sentiments among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visa waiver does not always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Nevertheless, Korea-ASEAN visa waiver need to be careful when we consider the wage gaps between the ROK and some ASEAN countries. As progressing visa waiver,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repare security measures such as Advanced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or to advance it step by step, testing and responding visa waiver program temporarily.

**<Key words>** New Southern Policy, Irregular Immigrant, Visa Waiver, Security,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